

##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1. 집합투자기구명: 세이 가치형 증권 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 이익분배 관련 조항 정정
  - 판매회사별 수수료 차등적용을 위한 문구수정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009년 12월 21일 시행)사항 반영하여 보고서 교부방법 변경
  - 세법 개정(2010년 1월 1일)사항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전	정정후																																		
<b>표지</b>	작성기준일: 2009.09.2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09.10.08	작성기준일: 2010.01.08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0.02.08																																		
<b>제 2 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ccc;">변경시행일</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변경 사항</th> </tr> </thead> <tbody> <tr><td>2006.10.17</td><td>최초설정</td></tr> <tr><td>2007.05.10</td><td>Class C2 추가</td></tr> <tr><td>2008.01.28</td><td>Class C-W 추가</td></tr> <tr><td>2008.07.02</td><td>투자대상 변경 (주식선물 추가)</td></tr> <tr><td>2008.10.21</td><td>장기증권펀드 세제혜택 대상 펀드로 변경</td></tr> <tr><td>2009.05.02</td><t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세이 가치형 주식 투자신탁 → 세이 가치형 증권 투자신탁(주식)]</td></tr> <tr><td>2009.10.01</td><td>Class C-T 추가</td></tr> </tbody> </table>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6.10.17	최초설정	2007.05.10	Class C2 추가	2008.01.28	Class C-W 추가	2008.07.02	투자대상 변경 (주식선물 추가)	2008.10.21	장기증권펀드 세제혜택 대상 펀드로 변경	2009.05.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세이 가치형 주식 투자신탁 → 세이 가치형 증권 투자신탁(주식)]	2009.10.01	Class C-T 추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ccc;">변경시행일</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변경 사항</th> </tr> </thead> <tbody> <tr><td>2006.10.17</td><td>최초설정</td></tr> <tr><td>2007.05.10</td><td>Class C2 추가</td></tr> <tr><td>2008.01.28</td><td>Class C-W 추가</td></tr> <tr><td>2008.07.02</td><td>투자대상 변경 (주식선물 추가)</td></tr> <tr><td>2008.10.21</td><td>장기증권펀드 세제혜택 대상 펀드로 변경</td></tr> <tr><td>2009.05.02</td><td>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세이 가치형 주식 투자신탁 → 세이 가치형 증권 투자신탁(주식)]</td></tr> <tr><td>2009.10.08</td><td>Class C-T 추가</td></tr> <tr><td>2010.02.08</td><td>세법 개정(2010.01.01) 사항 반영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009.12.21)사항 반영 선취수수료 판매회사별 차등적용 및 이익분배관련 문구 수정</td></tr> </tbody> </table>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6.10.17	최초설정	2007.05.10	Class C2 추가	2008.01.28	Class C-W 추가	2008.07.02	투자대상 변경 (주식선물 추가)	2008.10.21	장기증권펀드 세제혜택 대상 펀드로 변경	2009.05.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세이 가치형 주식 투자신탁 → 세이 가치형 증권 투자신탁(주식)]	2009.10.08	Class C-T 추가	2010.02.08	세법 개정(2010.01.01) 사항 반영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009.12.21)사항 반영 선취수수료 판매회사별 차등적용 및 이익분배관련 문구 수정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6.10.17	최초설정																																			
2007.05.10	Class C2 추가																																			
2008.01.28	Class C-W 추가																																			
2008.07.02	투자대상 변경 (주식선물 추가)																																			
2008.10.21	장기증권펀드 세제혜택 대상 펀드로 변경																																			
2009.05.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세이 가치형 주식 투자신탁 → 세이 가치형 증권 투자신탁(주식)]																																			
2009.10.01	Class C-T 추가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6.10.17	최초설정																																			
2007.05.10	Class C2 추가																																			
2008.01.28	Class C-W 추가																																			
2008.07.02	투자대상 변경 (주식선물 추가)																																			
2008.10.21	장기증권펀드 세제혜택 대상 펀드로 변경																																			
2009.05.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펀드명칭 변경 [세이 가치형 주식 투자신탁 → 세이 가치형 증권 투자신탁(주식)]																																			
2009.10.08	Class C-T 추가																																			
2010.02.08	세법 개정(2010.01.01) 사항 반영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009.12.21)사항 반영 선취수수료 판매회사별 차등적용 및 이익분배관련 문구 수정																																			
<b>제 2 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b>	-	2010.01.08 기준으로 업데이트																																		

<p>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p>	<p>선취판매수수료 - Class A : <u>납입금액의 1%</u></p>	<p>선취판매수수료 - Class A : <u>납입금액의 1% 이내<sup>1)</sup></u> <u>주 1) 납입금액의 1%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가 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 일 전까지 자산운용사 및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u></p>
<p>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p>2010.01.08 기준으로 업데이트</p>
<p>제 2 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p>	<p>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하며 그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합니다.</p>	<p>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하며 그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합니다. <u>다만,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u></p>
<p>제 2 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p>	<p>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u>세금부담</u>이 없는 것이 원칙</p> <p>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u>예를 들어 집합투자기구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모두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u></p> <p>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기구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u>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아래의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u></p> <p><u>[증권거래세의 면제요건 명시]</u></p>	<p>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u>소득과세 부담</u>이 없는 것이 원칙</p> <p>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u>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u></p> <p>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기구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u>(이하 삭제)</u></p>
<p>제 2 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2) 투자자에 대한 과세</p>	<p>2) 투자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p> <p>- 투자자는 <u>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u>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u>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국내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u></p> <p>-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p>	<p>2) 투자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p> <p>- 투자자는 <u>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u></p>

	<p>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u>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u></p> <p>-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제 2 부.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3)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p>	<p>3)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p> <p>- 거주자 개인이 받는 <u>투자신탁의 과세이익</u>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p>(중략) <b>※ 상기 과세정책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b> <b>※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경우 공모투자신탁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b></p>	<p>3)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p> <p>- 거주자 개인이 받는 <u>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u>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p>(중략) <b>※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b></p>
<p>제 3 부.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p>	<p>-</p>	<p>최근 결산기 내역을 반영하여 업데이트</p>
<p>제 3 부.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p>		<p>2010.01.08 기준으로 업데이트</p>
<p>제 4 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p>		<p>최근 결산기 내역을 반영하여 업데이트</p>
<p>제 4 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p>		<p>2010.01.08 기준으로 업데이트</p>

<p>제 4 부. 3. 집합투자기구 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 서</p>	<p>-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의 내용을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u>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나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u>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p>	<p>-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 3 개월마다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의 내용을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u>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u>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p>
<p>제 4 부. 3. 집합투자기구 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3) 자산보관·관 리보고서</p>	<p>-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법 제123 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 관리보고서의 내용을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투자자 또는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수익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자산보관· 관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u>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u></p>	<p>-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법 제248 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 관리보고서의 내용을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투자자 또는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수익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자산보관· 관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u>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u></p>